

[별표 25] <개정 2008.12.18>

수수료 및 교육비(제79조제1항관련)

1.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승인 : 2만원
2.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
가.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: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

구 분							수수료(원)
제 조 소	지정수량의 3,000배 미만인 것	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					4만원
		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					5만원
		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					6만5천원
		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					7만5천원
		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,000배 미만인 것					9만원
	지정수량의 3,000배 이상인 것	구조설비의 기술검토	기술인력별 작업구분	기준공량(지정수량 의 3천배 이상 1만 배 미만)		「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법」 제10조 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 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 정액가산 방 식을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	
			기술협의 및 서류검토(특급기 술자)	0.25			
			제조·취급시설의 설계심사(고급 기술자)	0.80			
			소화설비의 설계심사(고급기 술자)	1.32			
			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(중급기술자)	0.25			
기타사항의 심사					2만원		
저 장 소	옥내 저장소	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					2만원
		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					2만5천원
		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					4만원
		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					5만원
		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					6만5천원
	특정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 크 저장소 외의 것	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					2만원
		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,000배 이하인 것					2만5천원
		지정수량의 10,000배를 초과하는 것					4만원
	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	기초·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	기술인력별 작업구분	기준공량(1백만L 이상 3백만L 미만)			「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법」 제10조 에 따른 엔 지니어링 사 업대가의 기 준의 실비정 액가산 방 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
			합계	탱크본체심사	기초 지반 심사		
			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(특급기술자)	0.250	0.125	0.125	
	기초·지반의 설계심사 (고급기술자)		1.250	0	1.250		

			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(고급기술자)	0.833	0.833	0	
			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(중급기술자)	0.291	0.125	0.166	
		기타 사항의 심사	용량이 50만 L 이상 100만 L 미만인 것				6만원
			용량이 100만 L 이상 500만 L 미만인 것				8만원
			용량이 500만 L 이상 1,000만 L 미만인 것				10만원
			용량이 1,000만 L 이상 5,000만 L 미만인 것				12만원
			용량이 5,000만 L 이상 1억 L 미만인 것				14만원
용량이 1억 L 이상인 것				16만원			
암반탱크저장소	기초·지반 및 탱크 본체의 기술 검토	기술인력별 작업구분	기준공량(탱크용량이 4억 L 미만)			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 의 실비정 액가산방 식을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	
			합계	탱크 본체 심사	기초 지반 심사		
		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(특급기술자)	2.000	1.000	1.000		
		기초·지반의 설계심사 (고급기술자)	7.541	0	7.541		
		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(고급기술자)	6.541	6.541	0		
		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(중급기술자)	0.500	0.250	0.250		
	기타사항의 심사	용량이 4억 L 미만인 것	18만원				
		용량이 4억 L 이상 5억 L 미만인 것	20만원				
		용량이 5억 L 이상인 것	22만원				
	옥내탱크저장소				2만5천원		
지하탱크저장소	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			2만5천원			
	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			4만원			
간이탱크저장소				1만5천원			
이동 탱크 저장 소	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·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			2만5천원			
	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, 항공기주유탱크차			4만원			
옥 외 저 장 소				1만5천원			
주유취급소	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			6만원			
	옥내주유취급소			7만원			
판매취급소	제1종판매취급소			3만원			
	제2종판매취급소			4만원			

취급소	이송취급소	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(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5km 이하인 것	2만5천원
		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km 이하인 것	8만원
		배관의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것	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km 또는 15km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
	일반취급소	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	

비 고

- 지정수량 3,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·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 - 지정수량 3,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·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·직접경비·제정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1천원 미만은 버리며,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·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가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

취급량(단위 kl 또는 ton)	보정계수
1,000 이하	1.00
1,000 초과 1,500 이하	1.15
1,500 초과 2,000 이하	1.34
2,000 초과	1.56

(비고)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L로 본다.

나. 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

탱크용량(L)	보정계수	탱크용량	보정계수	탱크용량	보정계수
5십만-1백만 미만	0.58	3천만-4천만 미만	4.42	9천만-1억 미만	9.48
1백만-3백만 미만	1.00	4천만-5천만 미만	5.22	1억-1억1천만 미만	9.97
3백만-6백만 미만	1.42	5천만-6천만 미만	6.21	1억1천만-1억2천만 미만	10.06
6백만-1천만 미만	2.36	6천만-7천만 미만	7.36	1억2천만 이상	11.6
1천만-2천만 미만	3.03	7천만-8천만 미만	8.03		
2천만-3천만 미만	3.75	8천만-9천만 미만	8.81		

다.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

탱크용량	보정계수
용량이 4억L 미만인 것	1.00
용량이 4억L 이상 5억L 미만인 것	1.26
용량이 5억L 이상인 것	1.86

3.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, 직접경비·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.

가. 직접경비 = 직접인건비×20%

나. 제경비 = 직접인건비×110%

다. 기술료 = (직접인건비+제경비)×20%

4. 동일한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제조소·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나.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: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·설비·기초·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3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

가.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: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

구 분		수 수 료
충 수 검 사	용량이 1만 L 이하인 것	1만원
	용량이 1만 L 초과 50만 L 이하인 것	2만원
	용량이 50만 L 초과 100만 L 미만인 것	5만원
	용량이 100만 L 이상인 것	35만원에 10만 L 또는 10만 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수 압 검 사	용량이 100 L 이하인 것	1만원
	용량이 100 L 초과 10,000 L 이하인 것	2만원
	용량이 10,000 L 초과 2만 L 이하인 것	3만원
	용량이 2만 L를 초과하는 것	3만원에 10,000 L 또는 10,000 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기 초·지 반 검 사		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
용 접 부 검 사		
암 반 탱 크 검 사		
이중벽탱크 검 사		
비 고		
1. 검사에 필요한 충수·가스충전·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	
2.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		
3.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.		

나.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: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

구 분	수 수 료
총 수 검 사	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
수 압 검 사	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
기 초 ·지 반 검 사	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
용 접 부 검 사	
암 반 탱 크 검 사	
이 중 벽 탱 크 검 사	

4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: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. 다만,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.
 - 가.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: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 - 나.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: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
5.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: 2만원
6.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: 8만원
7.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: 2만원
8.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: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
9.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: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10.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: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